

# SAMSUNG

## 2017 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 (주) 삼성전자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 8 조제 7 호의 2 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현황에 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현황은 2017 년 3 월 31 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활동내역의 경우 본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2016 년 1 월 1 일 이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내역임을 알려 드립니다.

# 목차

I. 지배구조 일반 .....	1
II. 주주.....	5
1. 주주의 권리.....	5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8
III. 이사회 .....	10
1. 이사회 기능.....	10
2.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	12
3. 사외이사.....	14
4. 이사회 운영.....	15
5. 이사회 내 위원회.....	21
6. 사외이사 평가 및 보상 .....	28
IV. 감사기구 .....	29
1. 내부감사기구.....	29
2. 외부감사인 .....	32
V.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34

### (1)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한다."

당사는 이러한 경영이념에 따라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글로벌 일류기업을 추구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의 근간이 되는 지배구조를 당사의 원칙과 정책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현재 사내이사 4 인과 사외이사 5 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이사회가 적합한 인물을 후보로 물색하여 추천합니다. 사외이사는 보다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별도의 결의과정을 통해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보는 주주총회에 앞서 공시되는 참고자료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통해 주주에게 충실하게 제공하고, 주주총회 당일에 주주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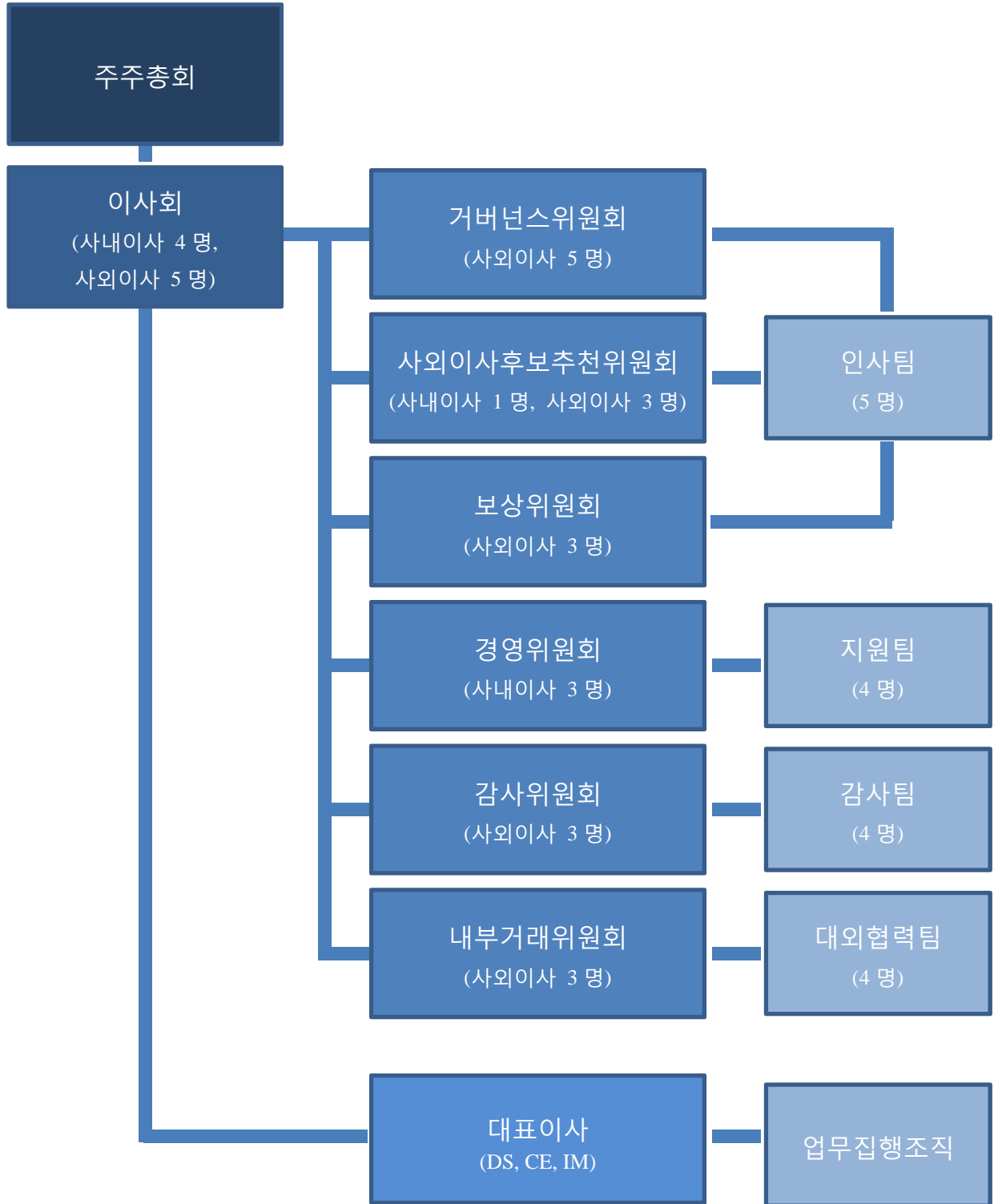
회사의 이사회는 독립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는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는 한편, 수시로 경영진이 배제된 사외이사만의 회의를 운영함으로써 보다 자유롭고 객관적인 의견교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정관 제 29 조 및 이사회 규정 제 5 조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여 운영 중입니다. 상법 제 398 조에 따라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이사회규정 제 9 조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기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는 이사회 의 전략적인 판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해 각 이사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사의 주력 사업부문인 DS 부문(Device Solutions), CE 부문(Consumer Electronics), IM 부문(IT & Mobile Communications)은 해당분야 사내 최고전문가가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참여하여 대표이사를 맡아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 또한 필요합니다. 사외이사는 금융, 보건의학, 법률, 공학, 공공부문의 전문가로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경영을 감독하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https://www.samsung.com/sec/ir>), 사업보고서(<http://dart.fss.or.kr/>) 등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 (2) 조직도

주주총회는 이사의 선임, 정관의 변경, 재무제표의 승인 등 회사경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승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보다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 내 6개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위원회 업무에 따라 관련 사내 담당부서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선임한 대표이사 3명은 3개 사업부문을 각각 대표하고 있으며, 업무집행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 (3) 지배구조 특징

#### 가. 사업책임자의 이사회 참여로 책임경영 실현

당사가 속한 IT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특징이 있어, 의사결정이 전략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환경 속에서는 각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이사가 필요하므로, 이사회는 DS 부문(Device Solutions), CE 부문(Consumer Electronics), IM 부문(IT & Mobile Communications)의 부문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사내 최고전문가가 사내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종합적인 경영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부문장들이 대표이사를 맡는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외이사는 금융, 보건의학, 법률, 공학, 공공부문의 전문가로서 사내이사와 경영진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감독하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 나. 권한 위임으로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의결사항 중에는 이사회 전원이 함께 검토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내 위원회가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정관 제 28 조의 2 및 이사회 규정 제 11 조의 2 에 따라 총 6 개의 위원회에 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각 이사에 통지되며, 각 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다. 사외이사 중심 위원회 운영으로 경영감독 강화

사업의 발전과 함께 이사회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경영현안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업무영역을 더욱 확대하여 새로운 분야까지 감독하게 되었고,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들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독립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며 경영활동을 다각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 발의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설치된 CSR 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사외이사가 주관하는 연구회(기업생태계발전연구회, 환경안전연구회)를 운영하며 외부전문가들과 협업하여 당사에 실질적인 조언을 한 바 있으며,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심의역할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7 년 4 월에 거버넌스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앞으로도 회사를 위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4) 지배구조 현황(요약)

내부기관	구성 (사외이사 /구성원)	의장/위원장 (이름, 사내·사외 여부)	주요 역할
이사회	5/9	권오현 (사내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li> <li>• 경영진의 업무집행 감독</li> </ul>
경영위원회	0/3	권오현 (사내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일반, 재무 관련사항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을 심의·결의</li> </ul>
감사위원회	3/3	이인호 (사외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상태를 포함한 회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li> </ul>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3/4	김한중 (사외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외이사후보의 독립성, 다양성, 역량 등을 검증하여 추천</li> </ul>
내부거래위원회	3/3	이인호 (사외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를 통해 회사경영의 투명성을 제고</li> </ul>
보상위원회	3/3	송광수 (사외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 보수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li> </ul>
거버넌스위원회	5/5	이병기 (사외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SR 위원회를 확대하여 개편(2017년 4월)</li> <li>•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역할 수행</li> <li>• 위원회 산하 CSR 리스크관리협의회는 CSR 리스크에 대한 사내 관리체계 감독 및 이슈사항 해결방안 협의</li> </ul>

## 1. 주주의 권리

### (1) 주주총회 개최 관련

당사는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4 주전까지 공고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사항>

구 분	제 46 기 주주총회	제 47 기 주주총회	제 48 기 임시 주주총회	제 48 기 주주총회
소집결의일 (공고일)	2015년 2월 13일 (2015년 2월 13일)	2016년 2월 12일 (2016년 2월 12일)	2016년 9월 12일 (2016년 9월 29일)	2017년 2월 24일 (2017년 2월 24일)
개최일자	2015년 3월 13일 오전 9시	2016년 3월 11일 오전 9시	2016년 10월 27일 오전 10시	2017년 3월 24일 오전 9시
개최장소	삼성전자빌딩 5층 다목적홀	삼성전자빌딩 5층 다목적홀	삼성전자빌딩 5층 다목적홀	삼성전자빌딩 5층 다목적홀
세 부 사 항	소요시간	1시간 50분	3시간 23분	1시간 15분
	이사회 구성원 참석여부	이사 9인 전원 참석	이사 9인 전원 참석	이사 9인 전원 참석
	영문 소집 통지	0	0	0
				이사 7인 참석 (사내이사 이재용, 사외이사 박재완 불참)

### (2) 주주총회 결의 및 의결권행사 관련 등

제 48기 정기주주총회 출석 주식수는 총 93.4백만주이며, 금번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은 없었습니다. 금번 2017년 3월 24일 개최된 48기 정기주주총회의 안건별 세부 찬반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 홈페이지(<https://www.samsung.com/sec/ir/governance-csr/general-meeting-of-shareholders/>)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 48 기 정기주주총회 안건별 세부 찬반 현황>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찬성률	반대율
제 1 호 의안	보통	제 48 기(2016.1.1-2016.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98.52%	1.48%
제 2 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97.22%	2.78%

한편, 2016 년 10 월 27 일 개최된 48 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제 1 호 의안 프린팅솔루션 사업부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및 제 2 호 의안 사내이사 이재용 선임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 되었습니다.

<제 48 기 임시주주총회 안건별 세부 찬반 현황>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찬성률	반대율
제 1 호 의안	보통	프린팅솔루션 사업부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99.96%	0.04%
제 2 호 의안	보통	사내이사 이재용 선임의 건	95.98%	4.02%

### (3) 주주환원 및 배당 관련

당사는 사업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추구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지난 2015 년 10 월에 3 개년(2015-2017 년)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였고, 11.4 조원 규모의 대규모 특별 자사주 매입/소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015 년 10 월부터 2016 년 9 월까지 4 회에 걸쳐 매입/소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 년 11 월에는 기존에 발표했던 총 주주환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2016 년 총 배당 규모를 전년 대비 30% 증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17 년 1 분기부터 분기배당을 실시하여 주주에게 연중 균등한 수준의 배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전보다 개선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당사와 경영진의 의지를 보다 확고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하에서 당사는 2016 년 주주환원으로 배당 4 조원을 지급하였고, 총 9.3 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분할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 회차까지 완료(약 5 조원)하였으며, 3 회차 매입(약 2 조원 규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보유 자기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7 년 4 월 이사회에서 보유중인 자기주식의 50%를 소각하기로 결의하였으며, 5 월 2 일자로 보통주 8,990,843 주 및 우선주 1,614,847 주를 소각하였습니다. 잔여분에 대한 소각은 2018 년중 이사회에서 결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당사의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 노력 속에 최근 3년간 당사의 배당 및 자기주식 매입 규모는 지속 증가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주주환원 내역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상반기
배당	배당 총액(억원)	30,000	30,687	39,919	19,377
	주당 배당금(원, 보통주 기준)	20,000	21,000	28,500	14,000
	배당 성향	13.0%	16.4%	17.8%	-
	시가배당률(보통주 기준)	1.5%	1.6%	1.6%	-
	자기주식 매입액(억원)	24,459	42,528	71,393	49,758
	총 주주환원 금액(억원)	54,459	73,216	111,312	69,135

※ 2014년 자기주식 매입액 : 2014.11.27~2015.1.26 진행된 자기주식 매입 기준입니다.

※ 2015년 자기주식 매입액 : 2015.10.30~2016.1.12 진행된 1차 특별 자기주식 매입 기준입니다.

※ 2017년 상반기 : 배당 = 1분기 및 2분기 배당액,

자기주식 매입액 = 2017년 1, 2회차(1월~7월) 자기주식 취득분이며, 보고서 제출시점인 현재 진행중인 3회차 자기주식 취득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4) 미준수 사항 및 그 사유(전자투표제 미도입)

당사는 현재 전자투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이를 포함하여 주주 의결권 행사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1) 주식발행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148,187,074 주입니다.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 주(1 주의 금액: 5,000 원)이며, 현재 당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 및 기명식 우선주의 수는 각각 129,768,494 주(87.6%)와 18,418,580 주(12.4%)입니다. 참고로, 현재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으며, 보통주에 대한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합니다.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주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IR 개최 현황

당사는 매년 1 월, 4 월, 7 월, 10 월 말경 각각 연간, 1 분기, 2 분기, 3 분기 실적발표 등을 위한 경영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 년 2 분기부터 투자자 이해 제고를 위해 경영설명회 약 3 주전에 잠정 집계된 실적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1 회 이상 Investors Forum 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한 발표를 통해 사업에 대한 주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설명회 및 Investors Forum 의 경우 주주들의 편의를 위해 웹캐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사가 개최하는 컨퍼런스 참가 및 방문 투자자 미팅, 컨퍼런스콜 등 수시 IR 활동을 통해 연간 300 회 이상 미팅을 하고 있으며, 필요시 최고경영진이 직접 투자자와 미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IR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IR 일정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samsung.com/sec/ir/ir-events-presentations/events/>) 및 KIND(<http://kind.krx.co.kr>)에 제출된 공시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 기업정보 공개 현황

당사 관련 정보는 당사의 홈페이지(<http://www.samsung.com/sec>) 및 DART(<http://dart.fss.or.kr>), KIND(<http://kind.krx.co.kr>) 등 공시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점점 더 높아지는 주주들의 정보 요구 수준에 맞추어 다양하고 깊이있는 IR 자료를 제공하여 당사에 대한 주주들의 이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용의 충실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공시, IR 행사, 재무정보, 주식정보, 기업지배구조 등 체계적인 구성과 함께 상세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 친화적 UI/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사업보고서, 재무정보, 회사소개 등 자료 다운로드 기능 강화 및 주요 행사 웹캐스팅 실시 등 정보 습득이 용이하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2003 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IR 홈페이지 내에서 독립된 콘텐츠로 제공(<http://www.samsung.com/sec/ir/>)하고 있습니다.

#### (4)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련 내부통제장치 현황 등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기 위해 별도의 내부통제 관련 규범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관 제 40 조는 '내부거래 등의 승인'을 이사회에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제 10 조 3 항 및 4 항에 '내부거래 등의 승인' 및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을 이사회에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제 구축을 통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열회사간 내부거래를 점검하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동 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50 억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하여 사전 심의하고, 그 이외의 거래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세부현황에 대한 자료 조사를 명령할 수 있으며, 법령 및 당사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 조치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2017 년 2 월 대외 후원금 등의 집행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강화했습니다. '심의회의'를 신설하여 1 천만원 이상의 모든 대외 후원금에 대해 사전 심의하고 10 억원이 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며, 분기별로 운영현황과 집행결과를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5) 미준수 사항 및 그 사유(KIND 영문공시 미실시)

당사는 런던 및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 각각 보통주 및 우선주 주식예탁증서(GDR)를 상장한 법인으로서, 런던증권거래소(LSE) 시스템을 통해 영문공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KIND)을 통한 별도 양식의 영문공시는 제출하고 있지 않으나, 외국인 주주의 편의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에서도 영문공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런던증권거래소 <http://www.londonstockexchange.com/>
- 영문 홈페이지 <http://www.samsung.com/global/ir/reports-disclosures/public-disclosure/>

## 1. 이사회 기능

### (1)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 10 조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

- 주주총회의 소집
-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
- 정관의 변경
- 자본의 감소
- 회사의 해산, 합병, 회사의 계속
-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사후설립
- 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주식배당 결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이사의 보수
- 주주총회 의장 선임(이사회가 주총 의장을 선임하여야 할 경우임)
- 주주총회 소집권자의 선임(이사회가 주총 의장 선임하여야 할 경우임)
-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2. 경영 등에 관한 사항

-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의 결정 및 변경
- 경영계획 및 분기, 반기보고서 승인
-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 3. 재무 등에 관한 사항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 신주발행의 결정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소각
  - 내부거래 등의 승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하거나, 동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동법 제 11 조의 2 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 및 특수관계인과 상법 제 542 조의 9 제 3 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동조 제 5 항 제 2 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거래총액을 승인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이사 제외)
  - 자기자본 2.5%이상 상당 타법인 출자, 처분
  - 자기자본 2.5%이상 상당 해외직접투자
  - 자산재평가 실시
  - 주권 등 액면분할, 병합
  -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변경
  - 건별 자기자본 2.5%이상 상당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 담보 : 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 채무보증 : 입찰, 계약, 하자, 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은 제외함.
  - 자기자본 5%이상 상당 금액 차입계약 체결
  - 해외증권시장 주권 상장
  - 투신사 자사주펀드 가입, 중도해지중 중요한 사항
  - 유상증자시 실권주식 처리
  - 자기자본 0.5%이상 상당 금액 가지급 또는 대여
  - 연간 10 억원 이상의 기부, 후원, 협찬
4. 이사 및 이사회,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 이사의 경업,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의 겸임 및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 이사회 의장의 선임
  - 대표이사의 선정 및 공동 대표의 결정
  - 이사의 직위, 직무의 위촉과 해촉
  - 위원회 설치 및 위원의 선임 및 해임
5. 기타
- 이사회 운영 규칙 및 위원회 운영규칙의 개폐
  -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법령으로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 28 조의 2 및 이사회 규정 제 11 조의 2 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권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되며,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단,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재결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집행은 대표이사가 총괄하여 사내조직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3) 최고경영자(대표이사) 승계

최고경영자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여 경영능력을 갖추고, 회사에 확고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량은 단기간 내 갖추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는 고도화된 평가절차와 육성전략에 따라 후보자를 발굴하고 보직을 관리하는 준비과정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런 경영환경 변화와 유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역량 분야의 다수의 후보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으며, 인사팀 등 사내 집행조직의 협업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렇게 관리된 후보군 중 전문성과 리더십 면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사내이사 후보로 선정하고, 상법 제 389 조, 정관 제 24 조 및 이사회 규정 제 10 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 (4) 이사의 리스크 관리

기업활동은 사업, 재무, 환경안전, 노사 등 경영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사내 담당조직이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고 있으나, 중대한 사안은 이사의 감독이 필요합니다.

당사 CSR 위원회(現 거버넌스위원회)는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CSR 리스크'를 중요한 관리대상으로 보고, 관리방안을 논의한 결과 2016년 7월 위원회 산하조직으로 'CSR 리스크 관리협의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협의회는 CSR 리스크에 대한 사내 관리체계를 감독하고 이슈사항 해결방안을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감독을 위해 사외이사 5인 전원과 커뮤니케이션팀 등 유관부서가 참여하여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인 리스크는 감사위원회 감독 하에 사내 재무부서가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에 설치가 의무화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 (1) 이사회 구성

당사 이사회는 정관 제 24 조에 따라 3인 이상 14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 383 조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를 두되, 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해 최대 인원은 14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2017년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사외이사는 5명입니다. 따라서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상법 제 542 조의 8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 현황 >

성명	직명	주요 약력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소속위원회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DS(Device Solutions) 부문장	2012.03.16	2018.03.15	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윤부근	대표이사 사장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CE(Consumer Electronics) 부문장	2013.03.15	2019.03.14	경영위원회

신종균	대표이사 사장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IM(IT & Mobile Communications) 부문장	2013.03.15	2019.03.14	경영위원회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부회장	2016.10.27	2019.10.27	
이인호	사외이사	전)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사장 전)신한은행 은행장	2010.03.19	2019.03.18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김한중	사외이사	차병원그룹 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 전)연세대학교 총장	2012.03.16	2018.03.15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송광수	사외이사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전)대검찰청 검찰총장	2013.03.15	2019.03.14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이병기	사외이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2012.03.16	2018.03.1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박재완	사외이사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전)기획재정부 장관	2016.03.11	2019.03.1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 (2) 사외이사 선임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사는 상법 제 382 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사외이사는 상법 제 542 조의 8 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선임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천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사외이사 3 명과 사내이사 1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외이사가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상법 제 542 조의 8 의 규정을 충족하며 독립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경영을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러한 인물 중에서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종, 국적, 성별, 출신지역, 종교, 전문분야 등을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시각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3) 이사 선임과 관련된 소수주주의 의견 반영

상법 제 542 조의 6 에 따라, 6 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 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 선임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 12 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당사는 여러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적 주주제안 요건의 충족 여부와는 별개로, 다양한 견해를 수렴함으로써 주주와 당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4) 미준수 사항 및 그 사유(선임사외이사 미선임, 집행임원제도 미도입 관련)

당사는 가장 먼저 재임한 사외이사가 사외이사를 대표하여 의견을 조율하는 등 선임사외이사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대신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3. 사외이사

사외이사 자격요건은 상법 제 382 조 및 제 542 조의 8, 정관 제 24 조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고 있습니다. 법적 자격요건 외에 여러 평가항목을 통해 독립성,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사에 적임인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가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회의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임 사외이사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경영현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발생시마다 사외이사에게 수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국내외 경영현장을 방문 시찰하고 경영계획설명회를 통해 회사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와의 미팅을 통해 주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과의 정기적 미팅 외에 경영진을 배제한 사외이사만의 모임도 개최하여, 사외이사간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시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인사팀은 사외이사 업무지원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 4. 이사회 운영

### (1) 이사회 소집과 운영

이사회는 분기별 재무제표 승인과 정기 주주총회 소집 등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일정을 연 7~8 회 정하여 운영하고, 그 외 필요시 추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 30 조 및 이사회 규정 제 8 조에 따라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 소집일 최소 24 시간 전에 각 이사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각 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안과 사유를 밝혀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 31 조 및 이사회 규정 제 9 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합니다. 상법 제 391 조에 따라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결의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회의에 참여한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사회 규정 제 9 조에 따라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진행에 관해서는 안건 경과의 주요내용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전원이 기명 날인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이사 전원에게 배포함으로써 의사결정 결과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내용, 이사의 참석률,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분기별로 공시합니다.

### (2) 이사회 개최 현황

2016 년에 총 11 회의 이사회(정기 7 회, 임시 4 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가. 2016 년 제 1 차 이사회 : 2016.01.28(목)

의안 내용	안건 구분	가결 여부
2015 년(제 47 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삼성카드 지분 매각의 건	결의 사항	가결
2016 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결의 사항	가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보고 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보고 사항	-

나. 2016 년 제 2 차 이사회 : 2016.02.12(금)

의안 내용	안건 구분	가결 여부
제 47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정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제 47 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 보고사항 :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 제 1 호 : 제 47 기(2015.1.1~2015.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 2 호 : 이사 선임의 건 · 제 2-1 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 2-1-1 호 : 사외이사 이인호 선임의 건 제 2-1-2 호 : 사외이사 송광수 선임의 건 제 2-1-3 호 : 사외이사 박재완 선임의 건 · 제 2-2 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 2-3 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 3 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 4 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결의 사항	가결
2016 년도 대규모 상품·용역거래 변경 승인의 건	결의 사항	가결
2015 년 준법점검결과 보고의 건	보고 사항	-

다. 2016 년 제 3 차 이사회 : 2016.03.11(금)

의안 내용	안건 구분	가결 여부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결의 사항	가결
대표이사 선정 및 이사 업무위촉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이사 보수 책정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삼성생명보험(주)와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일부 해지의 건	결의 사항	가결
기부금 출연의 건	결의 사항	가결

라. 2016 년 제 4 차 이사회 : 2016.04.28(목)

의안 내용	안건 구분	가결 여부
2016 년(제 48 기) 1/4 분기 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승인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삼성생명보험(주)와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삼성바이오로직스(주) 지분 취득의 건	결의 사항	가결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기부금 출연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삼성디스플레이(주) 이사 겸직 승인의 건	결의 사항	가결

마. 2016 년 제 5 차 이사회 : 2016.05.20(금)

의안 내용	안건 구분	가결 여부
삼성디스플레이(주)와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삼성디스플레이(주)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승인의 건	결의 사항	가결

바. 2016 년 제 6 차 이사회 : 2016.07.28(목)

의안 내용	안건 구분	가결 여부
2016 년(제 48 기) 상반기 재무제표, 반기보고서 및 6 월 분기배당 승인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	결의 사항	가결
경영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결의 사항	가결
CSR 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손해보험 가입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가입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사. 2016 년 제 7 차 이사회 : 2016.09.12(월)

의안 내용	안건 구분	가결 여부
프린팅솔루션 사업 매각의 건	결의 사항	가결
프린팅솔루션 사업부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정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임시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제 1 호 : 프린팅솔루션 사업부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 제 2 호 : 사내이사 이재용 선임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삼성바이오로직스(주) 지분 매각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아. 2016 년 제 8 차 이사회 : 2016.10.27(목)

의안 내용	안건 구분	가결 여부
2016 년(제 48 기) 3/4 분기 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승인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삼성중공업(주) 유상증자 참여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주)제일기획 지분 매입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삼성증권(주)와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삼성생명보험(주)와 부동산 매매의 건	결의 사항	가결
평생교육시설 설립 · 운영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가입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삼성생명공익재단 기부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자. 2016 년 제 9 차 이사회 : 2016.11.2(수)

의안 내용	안건 구분	가결 여부
프린팅솔루션 사업부 분할 종료 보고 및 공고 결의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차. 2016 년 제 10 차 이사회 : 2016.11.14(월)

의안 내용	안건 구분	가결 여부
미국 Harman 사 인수 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카. 2016 년 제 11 차 이사회 : 2016.11.29(화)

의안 내용	안건 구분	가결 여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의 건	결의 사항	가결
퇴직연금 불입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중장기 주주가치 제고방안 승인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삼성디스플레이(주) 설비 매입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준법활동 보고의 건	보고 사항	-

2017 년에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6 회의 이사회 (정기 5 회, 임시 1 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가. 2017 년 제 1 차 이사회 : 2017.01.24(화)**

의안 내용	안건 구분	가결 여부
2016 년(제 48 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삼성디스플레이(주)와 패널 개발계약 체결의 건	결의 사항	가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보고 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보고 사항	-

**나. 2017 년 제 2 차 이사회 : 2017.02.24(금)**

의안 내용	안건 구분	가결 여부
제 48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정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제 48 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 보고사항 :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 제 1 호 : 제 48 기(2016.1.1~2016.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 2 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결의 사항	가결
대외 후원금 운영기준(案)	결의 사항	가결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주주가치 제고 방안 진행현황 공유의 건	보고 사항	-

**다. 2017 년 제 3 차 이사회 : 2017.03.24(금)**

의안 내용	안건 구분	가결 여부
이사 보수 책정의 건	결의 사항	가결
2017 년 사회공헌기금 운영계획 승인의 건	결의 사항	가결
국제기능올림픽 후원의 건	결의 사항	가결
거버넌스위원회 설치·운영(안) 보고의 건	보고 사항	-

라. 2017년 제 4 차 이사회 : 2017.04.27(목)

의안 내용	안건 구분	가결 여부
2017년(제 49기) 1/4 분기 재무제표, 분기보고서 및 3월 분기배당 승인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	결의 사항	가결
보유 자기주식 소각의 건	결의 사항	가결
CSR 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사회공헌 기부금 출연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삼성디스플레이(주)와 임대차계약 체결 및 폐기보상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삼성디스플레이(주)와 개발 프로젝트 계약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지주회사 전환 검토 결과	보고 사항	-

마. 2017년 제 5 차 이사회 : 2017.06.12(월)

의안 내용	안건 구분	가결 여부
삼성디스플레이(주)와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삼성디스플레이(주)와 검사설비 공급 거래의 건	결의 사항	가결

바. 2017년 제 6 차 이사회 : 2017.07.27(목)

의안 내용	안건 구분	가결 여부
2017년(제 49기) 상반기 재무제표, 반기보고서 및 6월 분기배당 승인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손해보험 가입의 건	결의 사항	가결
삼성디스플레이(주)와 패널 개발계약 체결의 건	결의 사항	가결

## 5. 이사회 내 위원회

### (1)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는 정관 제 28 조의 2 및 이사회규정 제 11 조의 2 에 따라 총 6 개의 위원회에 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과 위원회별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원회명	구성	소속 이사명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경영위원회	사내이사 3 명	권오현, 윤부근, 신종균	하단 기재내용 참조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3 명	이인호, 김한중, 송광수	하단 기재내용 참조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3 명 사내이사 1 명	김한중, 이병기, 박재완, 권오현	하단 기재내용 참조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 3 명	이인호, 김한중, 송광수	하단 기재내용 참조
보상위원회	사외이사 3 명	송광수, 이인호, 이병기	하단 기재내용 참조
거버넌스위원회	사외이사 5 명	이병기, 이인호, 김한중, 송광수, 박재완	하단 기재내용 참조

#### 가. 경영위원회

경영위원회는 이사회 규정, 경영위원회 규정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결의합니다. 정관 제 28 조의 2 및 제 28 조의 3, 이사회 규정 제 11 조의 2 및 제 12 조, 경영위원회 규정 제 10 조에 따라 경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합니다. 경영위원회는 아래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결의합니다.

##### 1.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 회사의 연간 또는 중장기 경영방침 및 전략
- 주요 경영전략
- 사업계획·사업구조 조정 추진
- 해외 지점·법인의 설치, 이전 및 철수
- 해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 협력추진
- 국내외 주요 자회사 매입 또는 매각(자기자본 0.1%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기타 주요 경영현황
- 지점, 사업장의 설치 및 이전, 폐지
-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 최근 사업연도 생산액의 5%이상 생산중단, 폐업
- 자기자본 0.5%이상 기술도입계약 체결 및 기술이전, 제휴
- 자기자본 0.5%이상 신물질, 신기술관련 특허권 취득, 양수, 양도계약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5%이상 상당 제품수거, 파기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5%이상 상당 단일계약 체결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5%이상 상당 단일판매 대행 또는 공급계약 체결 또는 해지

- 조직의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
-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의 기본원칙의 결정 및 변경
- 명의개서 대리인의 선임, 해임 및 변경
-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설정에 관한 사항
-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의 제정

## 2. 재무 등에 관한 사항

- 자기자본 0.1%이상 2.5%미만 상당 타법인 출자, 처분
- 자기자본 0.1%이상 2.5%미만 상당 해외 직접투자
- 자기자본 0.1%이상 2.5%미만 상당 신규 담보제공 또는 신규 채무보증(기간 연장은 제외함)
  - 담보 : 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 채무보증 : 입찰, 계약, 하자, 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은 제외.
- 자기자본 0.1%이상 5%미만 상당 신규 차입계약 체결(기간 연장은 제외함)
- 내부거래의 승인
 

내부거래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30 억원 이상 50 억원 미만 상당의 자금(가지급금, 대여금 등), 유가증권(주식, 회사채 등) 또는 자산(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기존 계약을 중대한 변경 없이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함)
- 사채발행
- 자기자본 0.1% 이상의 부동산 취득 및 처분. 단, 제 3 자와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 한함.
- 주요 시설투자 등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으로 명시된 사항과 다른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

### 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제 542 조의 8, 정관 제 28 조의 5, 이사회 규정 제 12 조의 3 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고 선정하여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다. 내부거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제 구축을 통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적인 의무 없이 이사회 결의로 설치했으며,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내부거래 보고 청취권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현황에 대해 보고받을 수 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50 억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는 사전 심의하고 그 이외의 거래에 있어서도 중요한 거래라고 판단하는 거래는 심의 및 의결할 수 있음
- 내부거래 직권조사 명령권
- 내부거래 시정조치 건의권



## 라. 보상위원회

보상위원회는 법적인 설치 의무는 없으나 이사보수 결정과정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로 설치했으며,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
- 등기이사에 대한 보상체계
-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마. 거버넌스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는 법적인 설치 의무는 없으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로 설치했으며,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CSR 위원회가 권한을 확대하여 2017년 4월에 거버넌스위원회로 개편되었습니다.

- 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
-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사항
  - 주주환원 정책 사전심의
  - 주주권의 개선을 위한 각종 활동 검토
  - 기타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영사항 검토
- 위원회 산하 연구회, 협의회 등 조직의 설치, 구성, 운영과 관련된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위원회별 활동내역

가. 경영위원회

개최일자	의안 내용	안건 구분	가결 여부
'16.01.28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의 건 - 자회사 청산의 건 - 해외법인 설립의 건	결의 사항 결의 사항 결의 사항	가결 가결 가결
'16.02.17	- 특허 계약 체결의 건 - 메모리 투자의 건	결의 사항 결의 사항	가결 가결
'16.03.30	- 해외법인 설립의 건 - 평택단지 추가 투자의 건	결의 사항 결의 사항	가결 가결
'16.04.28	- 메모리 투자의 건	결의 사항	가결
'16.05.20	- 해외법인 지분 인수의 건 - 신규법인 설립의 건	결의 사항 결의 사항	가결 가결
'16.06.09	- 해외법인 지분 인수의 건 - 메모리 투자의 건 - 6월 분기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의 건	결의 사항 결의 사항 결의 사항	가결 가결 가결
'16.06.29	- 특허계약 체결의 건 - 해외법인 설립의 건 -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의 건	결의 사항 결의 사항 결의 사항	가결 가결 가결
'16.07.28	- 메모리 투자 및 해외법인 출자의 건 - 해외법인 청산의 건 - 마케팅법인 청산의 건	결의 사항 결의 사항 결의 사항	가결 가결 가결
'16.08.11	- 해외법인 지분 인수의 건	결의 사항	가결
'16.09.01	- 투자 자산 처분의 건	결의 사항	가결
'16.09.28	- 해외법인 설립의 건 - 해외법인 지분 인수의 건 -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	결의 사항 결의 사항 결의 사항	가결 가결 가결
'16.10.24	- 해외법인 철수의 건 - 메모리 투자의 건	결의 사항 결의 사항	가결 가결
'16.11.29	- 평택단지 건설 투자의 건 - S.LSI 투자의 건	결의 사항 결의 사항	가결 가결
'16.12.20	- 메모리 투자의 건 ※ 보고사항 - 투자자 제언의 건	결의 사항 보고 사항	가결 -

개최일자	의안 내용	안건 구분	가결 여부
'17.01.24	- 메모리 투자의 건 - S.LSI 투자의 건	결의 사항 결의 사항	가결 가결
'17.02.24	- 메모리 투자의 건 - 해외법인 청산의 건	결의 사항 결의 사항	가결 가결
'17.03.08	- 분기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의 건	결의 사항	가결
'17.04.24	- S.LSI 투자의 건 - 평택단지 투자의 건 - 해외법인 증자의 건 - 임대차 계약 체결의 건	결의 사항 결의 사항 결의 사항 결의 사항	가결 가결 가결 가결
'17.06.12	- 메모리 투자의 건 - TP 센터 투자의 건 - 분기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의 건 - 해외법인 청산 철회의 건	결의 사항 결의 사항 결의 사항 결의 사항	가결 가결 가결 가결
'17.07.27	- 메모리 투자의 건 - 화성캠퍼스 주차빌딩 신축의 건 - 해외법인 설립의 건 - 해외법인 설립의 건	결의 사항 결의 사항 결의 사항 결의 사항	가결 가결 가결 가결
'17.08.28	- 해외법인 출자의 건 - 매출채권 담보대출 한도 증액의 건	결의 사항 결의 사항	가결 가결
'17.09.12	- 분기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의 건	결의 사항	가결

#### 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일자	의안 내용	안건 구분	가결 여부
'16.01.28	- 사외이사후보 추천일 결정의 건	결의 사항	가결
'16.02.05	-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결의 사항	가결

※ 2016년 3월에 김은미 위원이 임기만료 퇴임하였고, 신임 박재완 사외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없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부거래위원회

개최일자	의안 내용	안건 구분	가결 여부
'16.01.27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1) 삼성카드 지분 매각의 건 - 2015년 4/4 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심의 사항 보고 사항	- -
'16.02.12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1) 2016년도 대규모 상품·용역거래 변경 승인의 건	심의 사항	-
'16.03.11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1) 삼성생명보험(주)와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일부 해지의 건 2) 기부금 출연의 건	심의 사항	-
'16.04.27	- 의결사항 1)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1) 삼성바이오로직스(주) 지분 취득의 건 2)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기부금 출연의 건 3) 삼성생명보험(주)와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 - 2016년 1/4 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결의 사항 심의 사항 보고 사항	가결 - -
'16.05.20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1) 삼성디스플레이(주)와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 2) 삼성디스플레이(주)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승인의 건	심의 사항	-
'16.07.27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1) 손해보험 가입의 건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가입의 건 - 2016년 2/4 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심의 사항 보고 사항	- -
'16.09.12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1) 삼성바이오로직스(주) 지분 매각의 건	심의 사항	-
'16.10.26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1) 삼성중공업(주) 유상증자 참여의 건 2) 지분 매입의 건 3) 삼성증권(주)와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 4) 삼성생명보험(주)와 부동산 매매의 건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가입의 건 6) 삼성생명공익재단 기부의 건 - 2016년 3/4 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심의 사항 보고 사항	- -
'16.11.29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1) 2017년 대규모 상품·용역거래 승인의 건 2) 퇴직연금 불입의 건	심의 사항	-

개최일자	의안 내용	안건 구분	가결 여부
'17.01.23	- 2016 년 4/4 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보고 사항	-
'17.02.22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1)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의 건	심의 사항	-
'17.04.26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1) 사회공헌 기부금 출연의 건 2) 삼성디스플레이(주) 임대차계약 체결 및 폐기보상의 건 - 2017 년 1/4 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심의 사항 보고 사항	- -
'17.06.12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1) 삼성디스플레이(주)와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	심의 사항	-
'17.07.26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1) 손해보험 가입의 건 - 2017 년 2/4 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심의 사항 보고 사항	- -

#### 라. 보상위원회

개최일자	의안 내용	안건 구분	가결 여부
'16.02.05	- 2016 년 이사보수한도 사전 심의의 건	결의 사항	가결
'17.02.22	- 위원장 선임의 건 - 2017 년 이사보수한도 심의의 건	결의 사항 결의 사항	가결 가결

#### 마. 거버넌스위원회

개최일자	의안 내용	안건 구분	가결 여부
'16.04.28	- 리스크관리협의회 설치 검토의 건	심의 사항	-
'16.05.20	- 리스크 관리방안 검토의 건 - 기업생태계발전연구회 제 2 기 연구결과 보고의 건	결의 사항 보고 사항	가결 -
'16.07.28	- CSR 리스크 관리협의회 설치의 건	결의 사항	가결
'16.11.29	- 2016 년 4 분기 CSR 리스크 관리협의회 결과 보고의 건	보고 사항	-

※ CSR 위원회는 권한을 확대하여 2017 년 4 월에 거버넌스위원회로 개편되었습니다.

개최일자	의안 내용	안건 구분	가결 여부
'17.02.24	- 2017 년 1 분기 CSR 리스크 관리협의회 결과 보고의 건	보고 사항	-
'17.04.27	- IR 동향 보고의 건 - 2017 년 2 분기 CSR 리스크 관리협의회 결과 보고의 건	보고 사항 보고 사항	- -
'17.06.12	-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 검토의 건 - 거버넌스위원회 운영 검토의 건	결의 사항 결의 사항	가결 가결
'17.07.27	- IR 동향 보고의 건 - 2017 년 3 분기 CSR 리스크 관리협의회 결과 보고의 건	보고 사항 보고 사항	- -

※ 감사위원회 관련 사항은 'IV.감사기구 - 1.내부감사기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 사외이사 평가 및 보상

### (1) 사외이사 평가

이사회와 각 위원회는 연간 활동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관련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 및 위원회 규정에 위배되거나 미비한 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개선합니다. 사외이사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는 회의 참석률, 기여도, 독립성 등의 내부기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사외이사 활동 지원을 개선하고 이사회와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 (2) 사외이사 보상

상법 제 388 조, 정관 제 34 조, 이사회 규정 제 10 조에 따라 이사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보상위원회는 주주총회에 부의될 이사보수한도를 사전에 심의하여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집행됩니다.

당사의 정책상 사외이사의 보상은 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상이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면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보상정책을 운영 중이며, 사외이사의 보상은 기본 급여와 회사 업무로 인한 경비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2016 년 사외이사 보수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수	보수총액	1 인당 평균보수액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188	90
감사위원회 위원	3	256	85

※ 인원수는 2016 년말 재임중인 사외이사 기준이며,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보수총액에는 2016 년 3 월에 퇴임한 김은미 이사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3) 미준수 사항 및 그 사유(사외이사 외부평가 미실시)

당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회의 참석률, 기여도, 독립성 등의 내부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종합 평가하고 있으며, 외부평가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1. 내부감사기구

### (1) 감사위원회

#### 가. 구성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 415 조의 2 및 제 542 조의 11, 정관 제 28 조의 4, 이사회 규정 제 12 조의 2 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해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총 3 인의 이사로 구성합니다. 단, 위원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됩니다.

#### 나. 권한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 ① 업무감사권 : 위원회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 등이 회사업무 전반에 걸쳐 행한 업무진행 전반을 감사할 수 있다.
- ② 영업보고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 :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 및 직원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이사보고의 수령권 : 이사는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 ④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 : 모회사의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을 시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⑤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각종의 소권 : 위원회는 총회결의 취소, 신주발행 무효, 감자 무효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담보제공 의무가 면제된다.
- ⑦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 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⑧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⑨ 외부감사인 후보자 추천에 관한 권한
- ⑩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사항에 관한 권한

#### 다. 감사위원회 활동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서류 및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설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검토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로부터 경영위원회의 심의내용과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중요한 업무에 관한 당사의 보고에 대해 추가검토 및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2016년에는 총 6 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결의사항 1 건, 보고 및 심의사항 14 건 등 총 15 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결의된 내용은 결의일로부터 2 일 이내에 각 이사들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의사록에 안건별 검토결과 및 경과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매분기 1 회 이상 개최되어야 하며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위원회 소집시기는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늦어도 24 시간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모사전송방식, 기타 발송 및 착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16년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 내용	안건 구분	가결 여부
'16.01.27	- 제 47 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2015 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2015 년 4/4 분기 비감사업무 수행 검토 보고 - 2015 년 감사실적 보고	보고 사항 보고 사항 보고 사항 보고 사항	- - - -
'16.02.12	- 제 47 기 정기주주총회 부의 안건 검토 - 2015 년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보고	심의 사항 보고 사항	- -
'16.04.27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 제 48 기 1/4 분기 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보고 - 2016 년 1/4 분기 비감사업무 수행 검토 보고	결의 사항 보고 사항 보고 사항	가결 - -
'16.07.27	- 제 48 기 상반기 재무제표 및 반기보고서 보고 - 2016 년 2/4 분기 비감사업무 수행 검토 보고 - 2016 년 상반기 감사실적 보고	보고 사항 보고 사항 보고 사항	- - -
'16.09.12	- 제 48 기 임시주주총회 부의 안건 검토	심의 사항	-
'16.10.26	- 제 48 기 3/4 분기 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보고 - 2016 년 3/4 분기 비감사업무 수행 검토 보고	보고 사항 보고 사항	- -



<2017 년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 내용	안건 구분	가결 여부
'17.01.23	- 제 48 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2016 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2016 년 4/4 분기 비감사업무 수행 검토 보고 - 2016 년 감사실적 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계획 보고	보고 사항 보고 사항 보고 사항 보고 사항 보고 사항	- - - - -
'17.02.22	-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결의 사항	가결
'17.02.24	- 제 48 기 정기주주총회 목적사항 심의 - 2016 년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보고	심의 사항 보고 사항	- -
'17.04.26	- 제 49 기 1/4 분기 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보고 - 2017 년 1/4 분기 비감사업무 수행 검토 보고 - 2017 년 1/4 분기 대외후원금 현황 보고	보고 사항 보고 사항 보고 사항	- - -
'17.07.26	- 제 49 기 상반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2017 년 2/4 분기 비감사업무 수행 검토 보고 - 2017 년 2/4 분기 대외 후원금 현황 보고 - 2017 년 상반기 감사실적 보고	보고 사항 보고 사항 보고 사항 보고 사항	- - - -

(2) 감사보조조직

당사는 상법 제 542 조의 13 에 따라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였으며, 준법지원인은 경영진과 임직원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지를 감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 현황>

성명	현직	최종학력	선임일
이상주	삼성전자 법무실 Compliance 팀장	고려대 법학박사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2016.01.28

또한, 당사는 내부 감사팀을 운영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은 정기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 등을 통해 조직의 업무를 감사하고 있으며 감사실적을 연 2 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2. 외부감사인

### (1)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 조의 2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에 따라 연속하는 3 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승인시 규모, 글로벌 감사 능력, 감리 지적사항 등 객관적인 역량 지표와 각 사의 제안서 제출 내용을 분석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17 년 1 월 23 일 외부감사인 선임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2 월 22 일 2017 사업연도부터 2019 사업연도까지 연속하는 3 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하는 안건을 승인하였습니다.

###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위원회는 매분기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있으며 감사방법론의 적정성, 내부감사부서와의 협력 정도, 감독당국의 제재 현황 및 감사담당파트너의 주기적인 교체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모든 비감사 업무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제 21 조 등에서 규정한 금지업무는 다른 회계법인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6 년 이후 당사와 삼일회계법인과의 비감사 업무 계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보수
제 49 기 상반기	2017 년 1 월	세무자문업무	2017.01~2017.06	28
	2016 년 12 월	관세 등 관련 자문업무	2017.01~2017.06	251
	소 계			279
제 48 기 (전기)	2016 년 12 월	세무자문업무	2016.12~2016.12	220
	2016 년 2 월	관세 등 관련 자문업무	2016.01~2016.12	1,133
	소 계			1,353

### (3) 외부감사인의 주주총회 참석 의무화 여부

당사 정관에 외부감사인의 주주총회 참석 의무화를 명시한 규정은 없으나, 당사 요청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매년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 (4) 외부감사인인 외부감사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의 보고절차

감사위원회는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매분기 결산 감사(검토) 후에 직접 보고를 받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2016년 1월 27일 제 1회 감사위원회에서 2015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2016년 4월 27일 제 3회 감사위원회에서 2016년 1/4 분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를, 제 2016년 7월 27일 제 4회 감사위원회에서 2016년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결과를, 2016년 10월 26일 제 6회 감사위원회에서 2016년 3/4 분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2017년 1월 23일 제 1회 감사위원회에서 2016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2017년 4월 26일 제 4회 감사위원회에서 2017년 1/4 분기 재무제표검토 결과를, 2017년 7월 26일 제 5회 감사위원회에서 2017년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 (1) 사회적 책임 수행 관련 등

당사는 주주, 고객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아동노동 금지정책(2014년 6월), 실습생 가이드라인(2016년 4월), 이주근로자 가이드라인(2016년 12월)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4월, 기존의 이사회 산하 'CSR 위원회'를 '거버넌스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사회·환경적 가치창출의 통합적인 성과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소통하고자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samsung.com/sec/ir/reports-disclosures/annual-reports/>

## (2) 임직원의 보상체계 관련

당사는 1998년 연봉제를 도입하여 연봉등급별로 급여를 차등 지급하였고 2010년 누적연봉제 도입을 통해 개인별 성과에 따른 보상 차별화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사업부별 연간성과(목표달성도 및 이익 실현 등)에 연계하여 보상 지급액이 차등되는 인센티브 제도(목표인센티브, 성과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보수규정에 따라 임금 체계 합리화를 위해 임금 항목을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의 기본급은 보수규정에 따라 직무/역할의 가치 및 책임의 크기,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등급별로 임금범위를 달리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직원 총보수>

(단위 : 명/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비율	임직원 수	임직원 평균보수
2015년	99,595	143,526	69.4%	98,895	1.01
2016년	102,406	147,251	69.5%	95,460	1.07

※ 순이익, 직원 수 및 보수금액은 본사 기준이며, 사내이사(4명) 제외 기준입니다.

※ 임직원 수는 연간 평균인원 기준입니다.